

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우근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6569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3. 1. 27.

발의의원 : 박우근, 하병문,
이동욱, 김대현,
조경구, 윤권근,
손한국, 김정옥,
육정미, 하중환,
이재숙, 김태우
의원(12명)

1. 제안(개정) 이유

현행 조례로 정한 우수식품 인증 범위에 축산물가공업으로부터 생산된 제품까지 추가로 규정함으로써, 지역의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관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- 가. 우수식품 인증을 위한 “식품”의 정의에 축산물가공업으로부터 생산된 제품을 추가함(안 제2조)
- 나. 우수식품 인증 취소에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위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(안 제7조)

3. 참고 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식품위생법」 및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
- 나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- 다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대구광역시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“식품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가.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·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·가공업으로부터 생산한 것

나. 「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」 제21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으로부터 생산한 것

제7조제3호 중 “「식품위생법」”을 “「식품위생법」,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식품”이란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·가공업소 및 즉석판매제조·가공업소에서 생산한 것을 말한다.</p> <p>2.·3. (생략)</p> <p>제7조(인증의 취소) 시장은 우수식품 인증을 받은 식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심의 등을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3. 「식품위생법」 등을 위반하여 품목 제조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</p> <p>4. ~ 6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“식품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가.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·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·가공업으로부터 생산한 것</p> <p>나. 「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」 제21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으로부터 생산한 것</p> <p>2.·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인증의 취소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「식품위생법」,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----- -----</p> <p>4. ~ 6. (현행과 같음)</p>

관 계 법 령

□ 식품위생법 시행령

제21조(영업의 종류)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식품제조·가공업: 식품을 제조·가공하는 영업
2. 즉석판매제조·가공업: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·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

(3호이하 생략)

□ 식품위생법 시행규칙

제37조(즉석판매제조·가공업의 대상) 영 제21조제2호에서 “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”이란 별표 15와 같다. <개정 2010. 3. 19., 2013. 3. 23.>

□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

제21조(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) 법 제21조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(1~2호 생략)

3. 축산물가공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

가. 식육가공업: 식육가공품(식육간편조리세트의 경우 자신이 절단한 식육 또는 자신이 만든 식육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)을 만드는 영업.

나. 유가공업: 유가공품을 만드는 영업

다. 알가공업: 알가공품을 만드는 영업

(3의2 이하 생략)